

노인신장학연구회 회칙

1 차 개정 2021.01.30.

제정 2019.03.01.

제 1 조 (명칭)

본 모임은 ‘노인신장학연구회(The Korean Society of Geriatric Nephrology, 이하 본회)’라 하고, 대한신장학회 산하 연구회로 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본 연구회는 우리나라 노인 신장질환에 대한 진료, 연구, 교육 활동의 정립과 노인 신장질환 환자에서의 최적의 치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자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한 학문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업)

본 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) 노인 신장질환 관련 정기적 학술 집담회 시행
- 2) 노인 신장질환에 대한 학술 연구
- 3) 노인 신장질환에 대한 진료지침 개발
- 4) 노인 신장질환에 대한 정책 개발에 참여
- 5) 노인 신장질환과 관련된 수련 및 교육 사업 개발
- 6) 노인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 4 조 (소재지)

이 연구회의 사무국은 회장이 근무하는 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조 (회원의 구성)

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인터넷회원으로 구성한다.

- 1) 정회원은 대한신장학회 정회원이면서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지원한 회원으로 한다.
- 2) 준회원은 대한신장학회의 준회원으로 본회에 참여하는 회원 및 대한신장학회의 회원이 아니지만 노인학 관련 분야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면서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적합하여 본회에 참여하고자 지원한 자로 한다.

- 3) 인터넷회원은 노인신장학연구회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홈페이지의 일부 내용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회칙에 의해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회원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.

제 6 조 (정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1) 본 연구회의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.
- 2) 본 연구회의 정회원은 회칙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)

본 연구회의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 혹은 제명할 수 있다.

- 1) 본 연구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였을 시 회원의 자격을 정지 혹은 제명할 수 있다.
- 2) 본 연구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- 3) 회비를 2 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
제 8 조 (임원)

본 연구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- 1) 회장 1 인
- 2) 부회장 1 인
- 3) 총무 1 인
- 4) 이사 10 명 내외
- 5) 감사 1 명

제 9 조 (임원의 선출과 임기)

- 1) 본 연구회의 회장 선출은 전임 회장의 추천 또는 정회원의 호선에 의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총회에서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.
- 2) 본 연구회의 부회장 및 총무는 선출된 회장이 지명한다.

- 3) 본 연구회의 이사는 회장, 부회장 및 총무로 구성된 임원 선임 위원회에서 지명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.
- 4) 본 연구회의 감사는 전임/신임 회장, 부회장 및 총무로 구성된 임원 선임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5) 본 연구회의 회장 및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 10 조 (임원의 임무)

- 1)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며, 제 3 조에 정한 사업을 수행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여 연구회 사업 계획, 각종 학술 집담회, 수련 및 교육 사업, 보칙 제정 및 회칙 개정안 및 기타 운영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.
- 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 동안 업무를 대신한다.
- 3) 총무는 본 연구회의 운영상에 필요한 제반 업무와 사업 계획을 기획하고 추진하며, 본 연구회의 효과적인 진행을 담당한다.
- 4) 각 이사(학술, 교육, 홍보, 연구, 재무 등)는 회장을 보좌하여 연구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.

제 11 조 (회의)

본 연구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.

- 1) 정기 총회는 연 1 회 소집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2)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, 또는 회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3) 총회는 본 연구회의 최종 의결기구로써 아래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- (1)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인준
 - (2) 임원의 선출 및 인준
 - (3) 기타 총회에 부의되는 사항
- 4)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5) 이사회는 연구회 임원으로 구성되며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아래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- (1) 회원의 자격심사 및 명예회장의 추대
 - (2) 사업계획 및 세입, 세출,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

- (3) 사무직제 및 제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
- (4) 학술대회 및 기타 연수강좌 준비에 관한 사항
- (5) 포상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
- (6) 보칙 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
- (7) 기타 운영상 중요한 사항

제 12 조 (경비)

본 연구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는 회비, 찬조금과 대한신장학회를 통한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 13 조 (회계 및 결산)

본 연구회의 예산과 결산은 정기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.

부 칙

1.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신장학회의 관례와 지침에 따른다.
2. 본 개정 회칙은 총회 승인을 받아 2021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